

## < 변경 대비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마음편한인덱스증권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2. 변경시행일 : 2022.01.25
3. 주요 정정사항 :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및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

**[신탁계약서] :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**

정정 전	정정 후
<p><b>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</b>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)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[이하 "순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)"이라 한다]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(당해 종류 수익증권)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 <p>② ~ ④ &lt;생략&gt;</p>	<p><b>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</b>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)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[이하 "순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)"이라 한다]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(당해 종류 수익증권)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 <p>② ~ ④ &lt;현행과 같음&gt;</p>
<p><b>제32조(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)</b>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대차대조표</u></p> <p>2. ~ 3. &lt;생략&gt;</p> <p>② ~ ③ &lt;생략&gt;</p>	<p><b>제32조(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)</b>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재무상태표</u></p> <p>2. ~ 3.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② ~ ③ &lt;현행과 같음&gt;</p>
<p><b>제39조(보수)</b> ① &lt;생략&gt;</p> 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대차대조표상</u>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~ 3. &lt;생략&gt;</p> <p>③ &lt;생략&gt;</p>	<p><b>제39조(보수)</b> ①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재무상태표상</u>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~ 3.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③ &lt;현행과 같음&gt;</p>
<신설>	부칙
	<p>이 신탁계약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</p>

**[[간이]투자설명서] :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및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**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
	정기갱신	-	- 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 등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	기준일 현재 갱신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	자본시장법(시행령)	- 채권 :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	- 채권 :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

<p>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[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 - 유리KOSPI200 인덱스증권모투 자신탁[주식- 파생형]</p>	<p>개정사항 반영</p>	<p>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 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 채권,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 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 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 - 자산유동화증권 :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u>  - 동일종목 투자 나. 자산총액의 30%까지 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.....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 주택금융공사 또는 ..... 자산총액의 30% 까지 투자하는 경우</u></p>	<p>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 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 채권,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 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은 제외한다</u>) - 자산유동화증권 :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u>  - 동일종목 투자 나. 자산총액의 30%까지 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.....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..... 자산총액의 30% 까지 투자하는 경우</u></p>
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 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	<p>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</p>	<p>20.38%</p>	<p>20.79%</p>
<p>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 투자재산의 평가</p>	<p>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</p>	<p>- 산정방법 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공고 · 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.....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 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	<p>- 산정방법 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공고 · 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.....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 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	<p>정기갱신</p>	<p>-</p>	<p>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</p>
<p>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p>			
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 의 운용실적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	기준일 현재 갱신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
<끝>.